

고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안

(의안번호 제488호)

심사보고서

1998. 7. 30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7. 1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7. 18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7. 29

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현행 운용중인 사무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고 규정내용이 불합리하여 이를 정비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○ 사무신설(환경과)

-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·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
(군 허가대상외 건축물)

○ 사무명 조정(수산과)

- 어업신고 → 신고어업(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1~3호에 한함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건물은 읍면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으나 신고건물 축사의 폐수배출시설 및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신고 준공검사 등은 군에서 처리하고 있어 이원화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용어를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읍면에 사무를 위임한다면 환경에 대한 전문인력은 확보되어 있는지
- 답 : 규모가 적은 신고사항으로 전문성이 필요없는 업무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8. 7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